

의안번호	2200180
의 퇴 인	신영대 의원
회 답 일	2024.7.30.
추계번호	24E0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4조 852억원, 2029년 2조 6,858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4조 9,215억원(연평균 2조 9,843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안 제50조①, 제59조의2①,③)	-40,852	-29,366	-25,811	-26,329	-26,858	-149,215	-29,84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인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확대 - (현행)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인 및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개정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명당 150만원(거주자의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2	안 제59조의2제1항, 3항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현행) 자녀수에 따라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 - (개정안) 자녀수에 따라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

		명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공제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
2	안 제59조의2제1항, 3항 (자녀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
 -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징수 기준)
-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인상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 2024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손자녀”도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득세 신고자의 손자녀 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손자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곤란

- 2023년 말 세법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서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되었으며,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씩 적용하던 세액공제금액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20만원으로 인상됨

□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부양가족 기본공제) 2022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각각 13.0조원, 6.3조원으로 각각 2017~2022년(5년) 동안 연평균 1.8%, 3.1% 증가

[표 2]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적용인원	3,976	4,162	4,212	4,298	4,399	4,209
(증가율)	(4.0%)	(4.7%)	(1.2%)	(2.0%)	(2.4%)	(2.9%)
공제금액	122,193	126,523	127,175	128,049	129,503	126,689
(증가율)	(3.1%)	(3.5%)	(0.5%)	(0.7%)	(1.1%)	(1.8%)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적용인원	1,967	2,014	1,984	2,228	2,334	2,105
(증가율)	(3.0%)	(2.4%)	(-1.5%)	(12.3%)	(4.7%)	(4.1%)
공제금액	54,526	55,438	54,134	60,163	62,573	55,577
(증가율)	(1.7%)	(1.7%)	(-2.4%)	(11.1%)	(4.0%)	(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자녀세액공제) 2022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각각 5,386억원, 3,118억원임
-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제도변화(대상자 축소) 이후 3년간 (2019~2022년) 연평균 1.2% 증가
 -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제도변화(대상자 축소) 이후 3년간 (2019~2022년) 연평균 2.1% 증가
 - 자녀세액공제는 2017년까지 기본공제,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 6세 이하 추가공제가 폐지되어 기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만 적용
 - 2019년부터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2023년부터는 8세 미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폐지

[표 4]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 근로소득세,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2022 연평균
적용인원 (증가율)	2,654 (2.2%)	2,115 (-20.3%)	2,124 (0.4%)	2,153 (1.4%)	2,207 (2.5%)	2,161 (1.4%)
세액공제금액 (증가율)	7,064 (-3.9%)	5,200 (-26.4%)	5,185 (-0.3%)	5,259 (1.4%)	5,386 (2.4%)	5,277 (1.2%)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2022 연평균
적용인원 (증가율)	1,381 (2.3%)	1,168 (-15.5%)	1,117 (-4.4%)	1,213 (8.7%)	1,240 (2.2%)	1,190 (2.0%)
세액공제금액 (증가율)	3,747 (2.1%)	2,932 (-21.7%)	2,802 (-4.5%)	3,034 (8.3%)	3,118 (2.8%)	2,985 (2.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기본공제 확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소득세 신고자에 대하여 소득규모별로 기본공제금액 인상 전/후의 1인당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세수감소분 추계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로 현행 1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액 증가분을 차감하여 개정안의 과세표준 산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해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 도출
 - － 소득규모별 소득세 신고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내역을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와 “직계비속 외에 대한 기본공제”로 구분한 자료(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소득자 1인당 추가 공제금액(기본공제금액 증가분) 산출
 -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근로·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 및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의 분포가 전체 근로·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 및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의 분포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세수효과 산출
 -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에 산출세액 변화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액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세액 감소분 도출 후, 소득구간별 적용 인원(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소득세 신고자 수)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감소분 추계
-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2년 귀속기준 소득규모별·자녀수별(1명, 2명, 3명 이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인원 및 공제금액 자료(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공제금액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추계
 - 2022년 귀속기준 자녀수별 공제금액을 현행(2024년) 기준으로 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비 세수효과 추계
 - － 2022년 귀속 기준 자녀세액공제금액은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므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15만원→20만원)을 반영하여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추정
 -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소득세 신고자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 추계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계

- 국세청의 소득규모별·자녀수별 자녀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세액공제금액을 추계하여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 도출 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에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계
-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현행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1인당 세액공제금액이 첫째(30만원)와 둘째(50만원)에 대한 중간값인 40만원 내외에서 분포하므로, 현행 대비 개정안의 공제금액(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중간값 150만원) 비율을 반영하여 소득규모별로 추가 공제세액 산출

□ (공통사항) 개정안 적용 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본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수효과 추계

-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규모별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소득세 신고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비율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소득세 신고자수에 곱해 이 중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자 수 산출
-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수효과를 각각 추계하여 합산하므로 근로소득세 세수효과 추계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 제외하여 추계
- 개정에 따른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1인당 세수효과 규모가 현행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 먼저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인상에 따른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이 도출되면, 현행 1인당 결정세액에서 해당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을 차감하여 현행 기준 1인당 결정세액을 재산출하고, 동 금액과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의 크기를 비교하여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산출

(3) 추계 결과

-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2년 기준 2조 4,0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기본공제 규모 확대로 1조 5,462억원, 자녀세액공제 규모 확대로 8,615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2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합계
근로소득세	-10,171	-5,713	-15,884
종합소득세	-5,291	-2,902	-8,194
합계	-15,462	-8,615	-24,077

[표 7]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개정안에 따른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결정세액		결정세액 변동분 ³⁾	세수효과 (억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신고자 수 ¹⁾	평균 직계비속 인원 수		현행 ²⁾	개정안	현행 ²⁾	개정안		
	A	B	C=B×1.5	D0	D1=D0-C	E0	E1	F=E1-E0	G=F×A
합계	2,310,421	1.6	-	-	-	-	-	-	-10,171
1천만 이하	-	-	-	-	-	-	-	-	-
1.5천만 이하	22	1.2	1.8	5.2	3.5	0.0	0.0	-0.01	0
2천만 이하	1,348	1.1	1.6	7.2	5.6	0.1	0.0	-0.05	-1
3천만 이하	28,644	1.2	1.8	11.3	9.5	0.2	0.1	-0.06	-17
4천만 이하	109,336	1.3	1.9	17.0	15.1	0.5	0.3	-0.19	-204
4.5천만 이하	111,647	1.4	2.1	21.6	19.5	1.0	0.8	-0.23	-254
5천만 이하	148,299	1.5	2.2	24.9	22.6	1.4	1.1	-0.25	-374
6천만 이하	349,992	1.6	2.3	30.1	27.8	2.1	1.8	-0.28	-979
8천만 이하	642,214	1.6	2.5	41.2	38.7	3.6	3.3	-0.31	-2,023
1억 이하	407,038	1.6	2.4	58.2	55.7	6.7	6.2	-0.53	-2,151
2억 이하	463,600	1.6	2.4	95.8	93.4	16.4	15.6	-0.80	-3,724
3억 이하	34,868	1.6	2.4	197.4	195.0	52.9	52.0	-0.90	-314
5억 이하	10,095	1.6	2.4	327.2	324.8	102.4	101.5	-0.96	-97
10억 이하	2,793	1.6	2.4	607.2	604.8	215.8	214.8	-1.01	-28
10억 초과	518	1.7	2.5	1,964.3	1,961.8	810.7	809.6	-1.12	-6

주: 1)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소득세 신고자(결정세액 있는자 기준)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추정치로, 총급여규모별 종합소득신고자 비율(국세청 제공)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1인당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전체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 자)의 1인당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나타냄

3)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및 「2023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8]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현행		개정안에 따른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결정세액		결정세액 변동분 ²⁾	세수효과 (억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신고자 수 ¹⁾	평균 직계비속 인원 수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	C=B×1.5	D0	D1=D0-C	E0	E1	F=E1-E0	G=F×A
합계	1,787,922	-	-	-	-	-	-	-	-5,291
1천만 이하	35,912	1.5	2.3	2.9	0.6	0.1	0.0	-0.08	-113
2천만 이하	266,258	1.6	2.3	9.6	7.3	0.3	0.2	-0.10	-277
3.5천만 이하	330,566	1.6	2.4	19.1	16.8	0.9	0.7	-0.27	-920
4천만 이하	372,577	1.6	2.4	28.7	26.3	2.1	1.8	-0.29	-254
5천만 이하	88,670	1.6	2.4	35.3	32.8	2.9	2.6	-0.31	-425
6천만 이하	140,491	1.6	2.5	44.3	41.8	4.1	3.7	-0.32	-341
8천만 이하	108,195	1.7	2.5	57.3	54.8	6.3	5.8	-0.53	-781
1억 이하	148,708	1.6	2.5	76.6	74.1	10.3	9.8	-0.53	-450
2억 이하	85,132	1.6	2.5	121.9	119.4	23.0	22.2	-0.78	-1,099
3억 이하	141,630	1.7	2.5	226.8	224.3	56.0	55.1	-0.86	-278
5억 이하	32,743	1.7	2.5	361.9	359.4	101.4	100.5	-0.92	-191
7억 이하	20,971	1.7	2.5	566.8	564.3	175.3	174.3	-0.99	-70
10억 이하	7,130	1.7	2.6	804.9	802.3	262.9	261.9	-1.01	-44
10억 초과	4,371	1.7	2.6	2,532.7	2,530.1	931.1	930.0	-1.09	-50

주: 1) 기본공제적용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 추정

2) 현행 1인당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전체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 자)의 1인당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나타냄

3)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및 「2023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9]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개정안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⁴⁾	세수효과 (억원)
	자녀세액공제 적용 인원 ¹⁾	1인당 자녀세액공제금액 ²⁾			1인당 자녀세액공제금액 ²⁾				
		기본공제 ³⁾	출산입양공제	합계 ³⁾	기본공제	출산입양공제	합계		
	A	B ₁	B ₂	B	C ₁	C ₂	C	D=C-B	E=-D×A
합계	1,815,225	0.26	0.39	0.27	0.54	1.47	0.59	0.32	-5,713
1천만 이하		-	-	-	-	-		-	-
1.5천만 이하		-	-	-	-	-		-	-
2천만 이하	163	0.03	-	0.02	0.05	-	0.05	0.00	0
3천만 이하	15,649	0.14	0.13	0.14	0.27	0.47	0.27	0.02	-2
4천만 이하	75,455	0.19	0.30	0.19	0.38	1.11	0.41	0.10	-76
4.5천만 이하	76,822	0.23	0.33	0.23	0.46	1.25	0.51	0.28	-214
5천만 이하	101,871	0.24	0.36	0.25	0.50	1.34	0.57	0.31	-321
6천만 이하	249,141	0.26	0.39	0.27	0.53	1.45	0.60	0.34	-842
8천만 이하	510,510	0.27	0.41	0.28	0.57	1.53	0.62	0.34	-1,724
1억 이하	345,131	0.27	0.41	0.28	0.57	1.54	0.61	0.33	-1,137
2억 이하	397,350	0.27	0.42	0.27	0.56	1.56	0.59	0.32	-1,261
3억 이하	31,160	0.27	0.42	0.27	0.56	1.58	0.58	0.31	-97
5억 이하	8,936	0.27	0.43	0.27	0.56	1.61	0.58	0.31	-28
10억 이하	2,554	0.27	0.47	0.27	0.56	1.75	0.59	0.32	-8
10억 초과	485	0.28	0.45	0.28	0.60	1.67	0.62	0.33	-2

주: 1) 결정세액이 있는 자녀세액공제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추정치로, 총급여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국세청 제출)을 반영하여 추정함

2)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및 1인당 출산입양공제금액은 각각 해당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을 나타내며, 1인당 세액공제금액 합계는 기본공제 또는 출산입양공제를 받는 인원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합계)을 나타냄

3) 2022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65만원)을 반영하여 추정한 세액공제금액 추정치

4)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결정세액 감소분 반영 기준)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및 「2023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현행				개정안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³⁾	세수효과 (억원)
	자녀세액공제 적용 인원	1인당 자녀세액공제금액 ¹⁾			1인당 자녀세액공제금액 ¹⁾				
		기본공제 ²⁾	출산입양공제	합계 ²⁾	기본공제	출산입양공제	합계		
A	B ₁	B ₂	B	C ₁	C ₂	C	D=C-B	E=-D×A	
합계	1,216,956	0.26	0.45	0.27	0.55	1.65	0.61	-	-2,902
1천만 이하	136,936	0.23	0.43	0.24	0.48	1.60	0.54	0.00	0
2천만 이하	247,868	0.25	0.46	0.27	0.53	1.71	0.60	0.02	-50
3.5천만 이하	269,366	0.27	0.46	0.28	0.56	1.72	0.63	0.35	-943
4천만 이하	60,762	0.27	0.45	0.28	0.56	1.69	0.63	0.35	-212
5천만 이하	93,818	0.27	0.45	0.28	0.57	1.69	0.63	0.35	-326
6천만 이하	72,844	0.27	0.45	0.28	0.57	1.68	0.62	0.34	-250
8천만 이하	104,813	0.28	0.45	0.28	0.58	1.67	0.63	0.34	-360
1억 이하	62,986	0.27	0.43	0.28	0.58	1.62	0.61	0.33	-210
2억 이하	109,348	0.27	0.43	0.28	0.57	1.63	0.60	0.33	-357
3억 이하	26,816	0.27	0.42	0.28	0.58	1.58	0.61	0.33	-88
5억 이하	17,659	0.28	0.44	0.28	0.58	1.64	0.62	0.33	-59
7억 이하	6,109	0.28	0.44	0.29	0.59	1.64	0.63	0.34	-21
10억 이하	3,731	0.28	0.41	0.29	0.60	1.54	0.63	0.34	-13
10억 초과	3,900	0.29	0.43	0.30	0.62	1.63	0.65	0.34	-14

주: 1) 종합소득금액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및 1인당 출산·입양공제금액은 각각 해당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을 나타내며, 1인당 세액공제금액 합계는 기본공제 또는 출산·입양공제를 받은 인원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합계)을 나타냄

2) 2022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65만원)을 반영하여 추정한 세액공제금액 추정치

3)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결정세액 감소분 반영 기준)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및 「2023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기본공제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하며,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향후 제도변화를 반영한 증가율 적용
 - (기본공제) 근로소득세 1.8%, 종합소득세 3.1%의 증가율 적용
 - (자녀세액공제) 2019년부터 7세 이상 자녀로 대상이 축소되었고, 2023년부터 8세 이상으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2023년은 7~20세 이상 인구에서 7세가 차지하는 비율(2023년 6.7%)만큼 공제규모가 축소되고, 제도변경 전후로는 2019~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근로소득세 1.2%, 종합소득세 2.1%)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4~2029년 (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15,994	-16,247	-16,504	-16,766	-17,031	-17,301	-99,843	-16,640
종합소득세	-8,449	-8,683	-8,925	-9,173	-9,429	-9,692	-54,350	-9,058
합계	-24,442	-24,930	-25,429	-25,939	-26,460	-26,993	-154,193	-25,699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¹⁾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2025년 4조 85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4조 9,215억원(연평균 2조 9,8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5년은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25년 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가 동시 발생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28,179	-20,566	-16,766	-17,031	-17,301	-99,843	-19,969
종합소득세	-12,673	-8,801	-9,045	-9,297	-9,556	-49,372	-9,874
합계	-40,852	-29,366	-25,811	-26,329	-26,858	-149,215	-29,843

1)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5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다만, 2025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25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12(9개월분)가 반영되고, 나머지 3/12(3개월분)은 2026년(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며, 2026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